

의원 보충질문 답변자료

자료번호	소 관	수 도 과	질문의원	일 시 : 1994. 4. 28.
				이 태 근

(질문요지)

○. 이흥만 소유의 남은돈사가 '91. 11월경 작성된 합의 약정서에 따르면 돼지우리 철거 합의 조건이 이루어 졌었는데 시에서 원상복구 하여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내용)

□. 수도과장 최철규 입니다.

○. 이태근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상기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소유자 노윤길과 이흥만 간의 속초시 대포동 산 76번지 철도 부지 매입, 합의약정서에 따르면 매입금액을 수령과 동시 시설물내의 가구 및 가축을 완전 철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흥만이가 횃집을 경영하면서 가축오수로 인한 악취 및 분뇨가 바다로 바로 유입되어 수족관으로 해수 유입시, 분뇨 덩어리가 수족관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있고 왕파리가 횃집 실내까지 날아들어 이를 방지코자 남은 돈사를 매입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알고계신 ' 철거조건 합의 ' 는 이흥만과 전소유자가 가구 및 가축의 완전 철수이지 돈사의 철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개 개인간의 합의조건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 시로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고질적인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일념으로 공사추진중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민원 사안이 발생되어 공사 중단사태가 발생할것이 우려 되어 원상복구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민원 발생시 더욱 적극적으로 전반적인 과악을 하여 타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본 사안에 대하여는 도시과와 협의, 법 절차를 거쳐 이행토록 협조하겠습니다.